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제2023-3차 이사회 회의록

소집통지일	2023. 5. 19.	
통지방법	소집공문 이메일 발송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참석임원	7 인	1 인
불참임원	1 인	1 인

1.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14:00 ~ 15:30
2. 장 소 : 주교좌성당 106호
3. 사 회 : 이경호 이사장
4. 임원점명
 - 출석 이사 : 이경호, 변소현, 이경수, 이대성, 전호성, 최돈순, 최성희(이상 7명)
 - 불참 이사 : 김재철(이상 1명)
 - 출석 감사 : 이동현(이상 1명)
 - 불참 감사 : 홍재선(이상 1명)

이경호 이사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말한다. 이경호 이사장의 시작기도 후 개회를 선언하다.

5. 전 회의록 접수
전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하다.

6. 부의 안건
이경호 이사장은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임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다.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건

이경호 이사장이 제1호 의안을 상정하고 최돈순이사에게 안건 설명을 요구하다. 최돈순이사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안건을 설명하다.



1) 법인 정관 변경안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 후	변경사유
<p>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말 시 1월 전까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p>	<p>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u>이사장이</u> 매 회계연도 말 시 1월 전까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p>	<p>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p>
<p>제 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u>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u>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장 예산과 결산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p>
<p>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사장 1인 2. 이사 8인(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p>	<p>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사장 1인 2. <u>상임이사 1인</u> 3. 이사 8인(이사장, <u>상임이사</u> 포함) 4. 감사 2인</p>	<p>임원의 종류 변경 상임이사 신설</p>
<p>제 16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정수의 1/3 이상을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③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8.></p>	<p>제 16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u>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u> ③ <u>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u> ④ <u>상임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을 위한 보수규정을 작성하여 정한다.</u> ⑤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8.></p>	<p>② 상임이사 선출방법 신설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④ 상임이사 보수규정에 따른 내용수정</p>
<p>제 19조 (임원의 직무)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19조 (임원의 직무)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u>상임이사 또는</u>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이사장 사고 시 상임이사 직무 대행 신설</p>
<p>제 21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p>	<p>제 21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u>상임이사를 제외한</u> 임원은 명예직으</p>	<p>상임이사 신설에 따른 변경</p>

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6조 (이사회회의 소집 등)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감사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 26조 (이사회회의 소집 등)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정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법인정관 제11조, 제12조 법인 및 시설 예산결산 주무관처 준수 위임

2) 법인 정관 기본재산목록 변경안 신규 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별첨1)	변경안 (별첨2)	변경사유
부동산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180-75 (전 1,433㎡) 취득가액 202,769,500원	신규취득
	2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180-76 (전 34㎡) 취득가액 4,811,000원	신규취득
	소계	6,475,771,674원	6,683,352,174원
	합계	6,475,771,674원	6,683,352,174원

이러 임원들이 질의하고 이를 듣고 심의를 하다. 이경호 이사장이 제1호 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출석임원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2호 의안 : 서울특별시립 신림중기청소년쉼터 시설명 변경 승(추)인 건

이경호 이사장이 제2호 의안 서울특별시립 신림중기청소년쉼터 시설명 변경 건을 상정하고 송영환소장에게 안건 설명을 요구하다. 송영환소장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안건을 설명하다. 서울특별시 행정표준기관코드 발급을 위한 고유번호증 시설명 정비 협조요청에 따라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명과 동일하도록 고유번호증 상의 시설명을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하다. 이어 임원들이 이를 듣고 심의를 하다. 이경호 이사장이 제2호 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3호 의안 : 릴리공동생활가정(1호,2호,3호,4호) 2023년 1차 추경예산안 승인 건

이경호 이사장이 제3호 의안 릴리공동생활가정(1호,2호,3호,4호) 2023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김복희원장에게 안건 설명을 요구하다. 김복희원장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안건을 설명하다. 이어 임원들이 질의하고 이를 듣고 심의를 하다. 이경호 이사장이 제3호 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4호 의안 : 마리아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3년 1차 추경예산안 승인 건

이경호 이사장이 제4호 의안 마리아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3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전태경팀장에게 안건 설명을 요구하다. 전태경팀장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안건을 설명하

다. 이어 임원들이 질의하고 이를 듣고 심의를 하다. 이경호 이사장이 제4호 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5호 의안 : 요한의집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건

이경호 이사장이 제5호 의안 요한의집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정우국장에게 안건 설명을 요구한다. 이정우국장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안건을 설명하다. 이어 임원들이 질의하고 이를 듣고 심의를 하다. 이경호 이사장이 제5호 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6호 의안 : 요한의집 2023년 1차 추경예산안 승인 건

이경호 이사장이 제6호 의안 요한의집 2023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정우국장에게 안건 설명을 요구한다. 이정우국장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안건을 설명하다. 이어 임원들이 질의하고 이를 듣고 심의를 하다. 이경호 이사장이 제6호 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7호 의안 : 우리마을 2023년 1차 추경예산안 승인 건

이경호 이사장이 제7호 의안 우리마을 2023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정은국장에게 안건 설명을 요구한다. 이정은국장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안건을 설명하다. 이어 임원들이 질의하고 이를 듣고 심의를 하다. 이경호 이사장이 제7호 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8호 의안 : 우리마을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건

이경호 이사장이 제8호 의안 우리마을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정은국장에게 안건 설명을 요구한다. 이정은국장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안건을 설명하다. 이어 임원들이 질의하고 이를 듣고 심의를 하다. 이경호 이사장이 제8호 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7. 보고사항

1)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 특별감사 관련 보고

최돈순이사는 2023년 1차 이사회 당시 회계보고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어, 법인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하다. 감사결과 시설운영위원회에 결산을 보고하면서 자료를 누락하여 생긴 오차를 감추려고 해당시설의 실장이 의도적으로 법인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다. 이에 실장이 사직의 의사를 밝혀 사표를 수리했으며, 해당 시설장에게는 법인 이사장이 관리 미숙에 대하여 주의,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보고하다.

8. 폐 회

이경호 이사장이 안건 심의 종료를 선언하니, 이대성이사 동의와 이경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경호 이사장의 마감기도 후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임원은 아래에 각자 기명날인하다.





이사장 이 경 후  이사 변 소 현 

이사 이 경 수  이사 이 대 성 

이사 전 호 성  이사 최 돈 순 

이사 최 성 희  감사 이 동 현 

감사 홍 재 선 

원본대조필 